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,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,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99호, 2024. 3. 19. 공포, 2025. 3. 20. 시행)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,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의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10. ~ 2025. 2. 19.)

3) 행정규제 : 생 략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”을 “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등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(이하 ‘소속기관장’ 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이 부상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장제7절의2(제54조의2, 제54조의3 및 제78조의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

제54조의2(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) 법 제43조의2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”란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.

제54조의3(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) 법 제43조의3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”이란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.

제78조의2(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) 법 제57조의2제5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”란 공무원등에 관한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.

제8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

제55조의2제6항 중 “별표 5의2”를 “별표 5의3”으로 한다.

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의2]

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(제54조의2 관련)

1. 화학적 유해인자

가. 납(CAS 7439-92-1)

나. 니켈(CAS 7440-02-0)

다. 벤젠(CAS 71-43-2)

라. 사염화탄소(CAS 56-23-5)

마. 수은(CAS 7439-97-6)

바. 스토타드 솔벤트(CAS 8052-41-3)

사. 스티렌(CAS 100-42-5)

아.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(CAS 109-86-4)

자. 유기수은(CAS 115-09-3)

차. 이산화황(CAS 7446-09-5)

카. 이황화탄소(CAS 75-15-0)

타. 일산화탄소(CAS 630-08-0)

파. 카드뮴(CAS 7440-43-9)

하. 크실렌(CAS 1330-20-7)

거.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(CAS 79-94-7)

너. 톨루엔(CAS 108-88-3)

더. 폴리염화비페닐(PCB)(CAS 11096-82-5, CAS 12672-29-6)

2. 약물적 유해인자: 메토트렉사트, 와파린, 이소트레티노인 등 「약사법」 제23조의2

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(妊婦禁忌) 성분

3. 물리적 유해인자

- 가. 고열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. 이 경우 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.
- 나. 방사선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.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·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.

4. 생물학적 유해인자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.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.

- 가. B형 간염 바이러스
- 나. 거대세포바이러스
- 다. 단순포진바이러스
- 라. 매독
- 마.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
- 바.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
- 사. 톡소포자충증
- 아. 파보바이러스 B-19
- 자. 풍진바이러스

5.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

관계가 있음이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시간적·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7절의 2</u>
<u><신 설></u>	<u>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</u>
<u><신 설></u>	<u>제54조의2(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) 법 제43조의2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”란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54조의3(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) 법 제43조의3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”이란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78조의2(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) 법 제57조의2제5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”란 공무원등에 관한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.</u>
제84조(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)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84조(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) ----- ----- -----.

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	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</u>
5. ~ 8. (생략) 제28조(공무상 요양 승인) ① (생략)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하고,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.	5. ~ 8. (현행과 같음) 제28조(공무상 요양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등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(이하 ‘소속기관장’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부상 또는 ----- 보내도록 ----- ----- 하여금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이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 제41조(장해급여의 청구) ① (생략)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	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41조(장해급여의 청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경우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

조사·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<u>보내야</u> 한다.	<u>으로 하여금</u> ----- ----- ----- <u>보내도록 하여야</u> ----- --.
제50조(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) ① (생략)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<u>받으면</u>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·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<u>보내야</u> 한다.	제50조(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받으면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</u> ----- ----- ----- <u>보내도록 하여야</u> ----- -----.
제82조(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) ①·② (생략) ③ 연금취급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 등을 <u>받으면</u>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·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<u>보내야</u> 한다.	제82조(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받으면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</u> ----- ----- ----- <u>보내도록 하여야</u>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 ④ ~ ⑥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